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나8553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나8553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036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배재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오경록

변론종결 2024. 9. 25.

판결선고 2024. 11.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036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2,3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2. 1. 접수 제12779호로 마친, 의왕시 D 임야 2,394㎡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2. 1. 접수 제127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 8. 2. 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갑 27,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자제한법 위반의 고소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 사실 및 위 처분에서 불기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한, 판사 조정민, 판사 조현준